

#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년 11월 30일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의안번호 : 134

나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11. 12, 문신우(대표발의), 정석자,  
박재우, 김혜림, 박미해 의원(5명)

다. 회부일자 : 2021. 11. 16.

라. 상정일자

-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
(2021. 11. 30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문신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정함(안 제3조)
-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심의사항을 정함(안 제4조부터 제6조)
-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-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8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진영)

가. 관계법령

해당사항 없음

## 나. 제정안 개요

-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안임.

## 다. 조문별 검토

연번	제 정 안	검 토
1	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·문화·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- 조례의 제정 근거 및 목적 명시
2	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"생활임금"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, 양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.	- 용어에 대한 정의
3	<b>제3조(적용대상)</b>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양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생활임금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1. 시 및 시 산하 투자·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.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.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	-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규정
4	<b>제4조(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)</b>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생활임금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.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.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-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규정

	<p>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,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</p>	
5	<p><b>제5조(위원회의 구성)</b>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양산시의회 의원 2명</li> <li>2.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</li> <li>3. 학교, 연구소,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</li> <li>4. 생활임금,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</li> <li>5.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</li> <li>6.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</li> </ol> <p>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-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규정</p>
6	<p><b>제6조(위원회 운영)</b>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,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</p>	<p>-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규칙 규정</p>

	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「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
7	<p><b>제7조(생활임금의 결정)</b>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의 물가상승율,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·노동 환경</li> <li>2.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</li> <li>3.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</li> </ol> <p>③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생활임금의 수준</li> <li>2. 생활임금 적용대상</li> <li>3.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</li> </ol> <p>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.</p>	- 생활임금 결정 요인 및 고시 방식 규정
8	<p><b>제8조(생활임금의 장려)</b>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양산시와 위탁·용역·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,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·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.</p>	- 시의 생활임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명시
9	<b>제9조(시행규칙)</b>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
10	<b>제10조(준용)</b>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.	

## 라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임금의 하한선 설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
-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 매년 생활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시 및 관계 업체 노동자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음.

**제3조(적용대상)**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양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생활임금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1. 시 및 시 산하 투자·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
2.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
3.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

- 본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대상은 총 892명, 생활임금 수준을 10,700원으로 책정한다고 가정하였을 시 2022년 기준 3,44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.

※ 본 조례안과 동일한 적용대상 범위를 명시한 서울시의 경우,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아 시의 재정으로 임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극히 일부로 파악됐음.

- 현재 11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다른 재정·고용 조건으로 인해 보장되는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의 범위가 상이한바, 집행부에서는 동일 업계의 노동자 간 임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으며,

-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 의무를 명시한 제8조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임금제도의 점진적인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임금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,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할 관계 기관과 수급 대상자 사이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음.

**※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**

- 전국 - 광역자치단체 14개 기초자치단체 101개

- 도내

구 분	조례명	시행일
경상남도	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	19. 12. 26.

※ 경상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조례 ×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생략

## 7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제정안	수정안
<p><b>제3조(적용대상)</b>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양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생활임금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 및 시 산하 투자·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</li> <li>2.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</li> <li>3.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</li> </ol>	<p><b>제3조(적용대상)</b>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양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생활임금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 및 시 산하 투자·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</li> <li>2.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</li> <li>3. &lt;삭 제&gt;</li> </ol>
<p><b>제7조(생활임금의 결정)</b>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.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7조(생활임금의 결정)</b>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고시할 수 있다.</p>
<p><b>제8조(생활임금의 장려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·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8조(생활임금의 장려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·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&lt;삭 제&gt;</p>

## 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☐ 참고사항

더 큰 변화 + 더 행복한 양산

문서번호	미래산업과-31663
보존기간	3년
결재일자	2021. 11. 19.
공개여부	부분공개

주무관	팀 장	과 장	국 장	부시장	시 장
장영국	홍인성	김진우	이민	오정호	김희정
협 조					

## 의원발의 조례제정(안)에 대한 검토보고

### ☐ 의원발의 조례제정(안) 및 발의자

-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- 김혜림(대표발의), 정석자, 박미해, 박재우, 최선호 의원
-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 
- 문신우(대표발의), 박미해, 정석자, 김혜림, 박재우 의원



### ☐ 제안이유

-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-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 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
-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 
-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

### ☐ 검토의견(결과)

-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-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, 조례 제정(시행)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
-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 
- 조례제정(시행)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동자간 임금 및 형평성 문제, 재정부담 등 예산 추계 검토, 관련기관과 대상자들의 의견수렴, 시행 지자체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(벤치마킹) 등을 위한 도입 검토·준비 기간 필요, 점진적 시행



## -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- 의원발의 조례제정(안)에 대한 검토보고

양산시의회 문신우(대표발의), 박미해, 정석자, 김혜림, 박재우 의원 발의  
「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

### 1 양산시 생활임금조례(안) 주요내용

- 생활임금 적용대상(안 제3조)
  - (1호)시 및 시 산하 투자·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
  - (2호)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
  - (3호)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
- 생활임금위원회 구성(안 제5조) 및 생활임금위원회 결정 절차(안 제7조)
  -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한 5명이상 11명 이하로 구성(안 제5조)
  - 물가상승률,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,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수준 결정(안 제7조)

### 2 검토사항

#### ○ 적용대상 및 산출비용

적용대상	인원수(명)	산출비용
1. 시 및 시 산하 투자·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	892	<2022년 기준 10,700원 적용시> 892명 × 1,540원 × 209시간 × 12개월 = 3,445백만원
2.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	미과약	
3.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	미과약	

- **대상인원 : 892명**(시 소속 노동자 약 800명, 투자·출연 노동자 92명)
  - ※ 서울시는 조례상 민간위탁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실제 극히 일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상황임(우리 시 산출대상에서 제외)
  - ※ 2021년 평균 기간제근로자 10월 기준 생활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투자·출연 노동자로 대상인원 산출
- **소요예산(추계) : 3,445백만원**(생활임금 10,700원, 892명 적용 추정금액)
  - ※ 산출근거 : 892명(연간) × 1,540원(시급차액) × 12월(근무기간) × 209\*(시간)
  - \* 209(월근무시간)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당 유급휴휴 8시간 포함(4.35주 × 48시간 = 209시간)
  - ※ 2021년 최저시급 : 8,720 / 2022년 최저시급 : 9,160원

### 3 타 기관(단체) 노동자간 임금 비교

구 분 (2022년 기준)	최저임금 노동자 (시간급 9,160원)	생활임금 노동자 (시간급 10,700원)	공무직 (가군 1호봉)	공무원 (9급 1호봉)
급 여	1,914,440원	2,236,300원	1,928,000원	1,682,733원

### 4 검토의견(결과)

-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상위법의 부재
  - 우리 시 대상인원은 892명(추정)으로 소요예산 추계 시 최저시급 대비 34억원의 추가 예산 수반 필요
  - 또한, 「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, 노사협약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공무원, 공무직 등 노동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해 같은 공공기관 노동자임에도 임금 격차가 생겨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며, 이로 인한 임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장래적으로 재정부담 가중 우려
  - 전국 지자체별로 생활임금 산정기준, 산정액 및 출자·출연기관, 위탁·용역기관 소속 노동자 등 적용대상 여부가 상이할 뿐 아니라,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국비, 공공노동, 지역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동자 간 임금 갈등 및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음
  - 생활임금의 도입은 점진적으로 산업 전반의 임금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, 우리 시뿐만 아니라 위탁기관 및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계와 상승된 임금의 감당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기관과 대상자들의 의견 수렴 기간 필요
  - 현재 도내 기초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(시행)을 하지 않고 있어, 타 지자체의 진행단계를 참고하기 위한 점진적 파악 시간 필요
- ⇒ 조례제정(시행)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동자간 임금 및 형평성 문제, 재정부담 등 예산 추계 검토, 관련기관과 대상자들의 의견수렴, 시행 지자체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(벤치마킹) 등을 위한 도입 검토·준비기간 필요, 점진적 시행

붙임 생활임금 관련 타 지자체 현황 1부

## 기타 생활임금 관련 타 지자체 현황

지자체명	생활임금(원)		비 고
	2021년	2022년	
서울	10,702	10,766	
부산	10,341	10,868	
인천	10,150	10,670	
광주	10,520	10,920	
대전	10,202	10,460	
세종	10,017	10,328	
울산	-	10,737	
경기	10,540	11,141	
강원	10,252	10,785	
충남	10,200	10,510	
충북	-	10,326	
전북	10,251	10,835	
전남	10,473	10,900	
경남	10,380	10,700	
제주	10,150	10,660	
광명	10,150	10,410	인구 30만

-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: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15개 지자체 제정
  - 광역 17개 중 14개 시도, 기초 226개 중 101개 시군구
- 적용대상 : 지자체, 출자·출연기관, 위탁·용역기관 소속 노동자 등 상이

#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

(대표발의 문 신 우 의원)

의안 번호	13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12.

발 의 자 : 문신우, 박미해, 정석자,  
김혜림, 박재우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정함(안 제3조)

나.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심의사항을 정함(안 제4조부터 제6조)

다.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
라.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 
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##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·문화·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"생활임금"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, 양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대상)**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양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생활임금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1. 시 및 시 산하 투자·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
2.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
3.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

**제4조(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)**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생활임금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
2.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
3.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

한 사항

4.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,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.

1. 양산시의회 의원 2명
  2.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
  3. 학교, 연구소,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
  4. 생활임금,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  5.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
  6.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,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「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생활임금의 결정)**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.

- 1. 시의 물가상승율,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·노동 환경
- 2.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
- 3.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③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

- 1. 생활임금의 수준
- 2. 생활임금 적용대상
- 3.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

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.

**제8조(생활임금의 장려)**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양산시와 위탁·용역·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,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·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0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한다.